

ENERGY INSIGHTS

KEEI / Biweekly

ISSN 1975-5023

주요 내용

- 2006년 국내 에너지수요 전망 1
- 최근 기후변화협약 이슈와 전망 5
- 적대적 M&A와 전력산업 9
- 해외 에너지시장 동향 17
- 연구원 동정 27

2006년 국내 에너지 수요 전망 (수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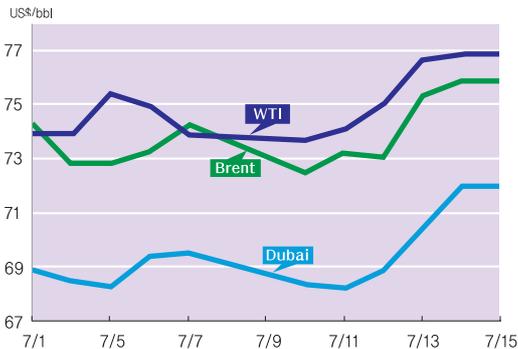
2005년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4.1% 증가

고유가 상황에서 총에너지소비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은 첫째는 2004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2.4%로 크게 낮았던 데 대한 상대적 영향이고, 둘째는 동절기 추운 날씨로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에너지 원단위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도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95.1백만 TOE를 기록하

국제유가 추이



평균가격 (7.1 - 7.15)

WTI	Brent	Dubai
75.05	73.73	69.24

였고, 수송부문 소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고유가 및 유가상승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전년의 소비 감소에 따른 상대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05년도의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난방용 수요의 증가로 전년보다 8.4%나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총에너지 수요는 235.6백만 TOE로 2.7% 증가 전망

금년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5.3%)에도 불구하고 유가 인상, 2005년 난방용 수요 급증에 대한 기술적 반락,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 둔화 등으로 총에너지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의 에너지원단위는 0.310(TOE/백만원)으로 2005년의 0.318보다 낮아질 전망이며, GDP탄성치도 0.51로 전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총에너지의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구 분	2005p	2006e				
	연간	1/4	2/4	3/4	4/4	연간
석 탄 (천톤)	84,828 (3.3)	21,870 (8.7)	21,213 (5.4)	22,625 (2.3)	23,028 (2.5)	88,737 (4.6)
석 유 (백만bbl)	761.4 (1.2)	202.0 (-2.3)	180.9 (0.4)	181.0 (2.1)	197.3 (0.1)	761.1 (0.0)
L N G (천톤)	23,068 (5.8)	8,955 (8.4)	4,451 (14.1)	4,077 (10.5)	7,643 (6.0)	25,127 (8.9)
수 력 (TWh)	5.2 (-11.5)	0.6 (-20.5)	1.3 (6.2)	2.3 (10.5)	1.1 (-6.8)	5.3 (1.5)
원 자 력 (TWh)	146.8 (12.3)	35.7 (0.4)	37.1 (-1.3)	38.3 (5.1)	37.7 (1.3)	148.8 (1.4)
기 타 (천TOE)	5,007 (25.9)	1,345 (17.9)	1,473 (17.5)	1,394 (15.9)	1,625 (15.2)	5,837 (16.6)
총에너지 (백만TOE)	229.3 (4.1)	63.0 (2.4)	54.7 (2.9)	55.5 (3.7)	62.3 (2.0)	235.6 (2.7)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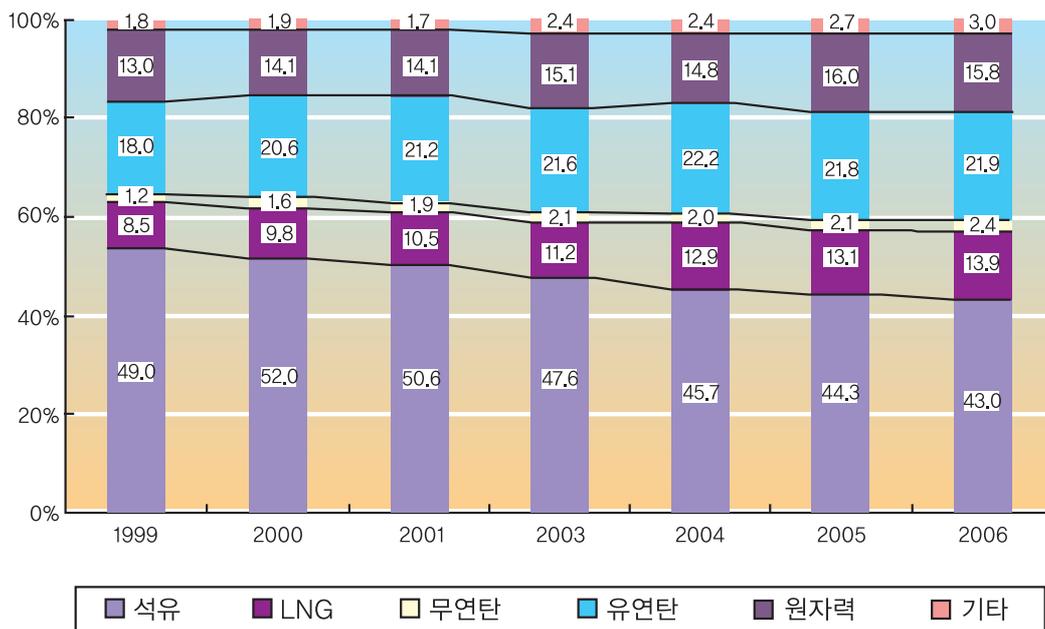
석탄 및 LNG를 제외한 기타 에너지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2006년 석유 수요는 원료용 석유 수요 둔화, 고유가에 의한 소비위축, 전년도의 난방용 수요 반등에 대한 상대적 반락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5년과 비슷한 761.1백만 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LNG 수요는 발전용 수요 증대로 8.9%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수요는 발전용 유연탄 수요 증가와 산업 및 가정·상업용 무연탄 수요 증가로 2005년 대비 4.6%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을 보면 LNG의 비중은 2005년 13.1%에서 2006년에는 13.9%로 증가하는 반면 석유의 비중은 '05년 보다 1.3%p 낮은 43.0%에 그칠 전망이다.

2006년 중에너지의 에너지원별 구성비 추이 및 전망



2006년도 최종에너지 수요는 2.0% 증가에 그칠 전망

산업 활동 증가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06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 둔화, 국내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06년 부문별 에너지수요 전망

구 분	2005p	2006e				
		1/4	2/4	3/4	4/4	연간
산업 (백만TOE)	95.1 (2.2)	24.6 (2.8)	23.5 (2.2)	24.0 (1.8)	25.1 (2.0)	97.2 (2.2)
수송 (백만TOE)	35.4 (2.4)	8.7 (4.3)	9.2 (0.3)	9.3 (5.1)	9.3 (2.8)	36.5 (3.1)
가정·상업 (백만TOE)	41.6 (8.4)	14.9 (-1.4)	8.4 (3.6)	7.1 (3.8)	11.6 (0.0)	42.0 (0.8)
합계 (백만TOE)	172.1 (3.7)	48.2 (1.7)	41.1 (2.0)	40.3 (2.9)	46.0 (1.6)	175.7 (2.0)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부문별로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산업활동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증가율은 1% 미만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문 수요는 산업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료용 석유 수요 둔화 등으로 2.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 증가율이 2005년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 수요는 고유가, 세계 석유화학 경기의 하강, 산업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연료대체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될 전망이다. 원료유 및 수송용 경유 수요는 증가되지만 휘발유와 난방 연료유 수요는 감소될 전망이다. 전력수요는 상업용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6.4%의 증가율을 시현할 전망이며, 도시가스는 3% 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시사점

2006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수요는 2.7% 그리고 최종에너지 수요는 2.0%의 낮은 증가율을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절약, 2005년 추위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기술적 반락 효과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라 심야전력 등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까지 원전의 추가증설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LNG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탄 수요는 2005년 44.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도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석유(등유)에 대한 연탄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데 기인한다. 따라서 국내 무연탄 수급상황을 고려한 연탄에 대한 수요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광수(kspark@keei.re.kr)

최근 기후변화협약 이슈와 전망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소비가 지속되면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상승과 지구온난화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2000년에는 370ppm으로 상승했으며 지구의 표면온도

는 지난 100년 동안 0.6℃, 해수면은 10-20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향후 100년 동안 1.4-5.8℃, 해수면은 9-88cm 상승하며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보다 높은 온도 상승(6℃)과 해수면 상승(1m)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뭄과 홍수의 강도가 강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해수에 의한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체결(1992년)에 이어 이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체결(1997년)되었다.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교토메카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2006년 7월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제도 집행위원회(CDM EB)에 등록된 CDM 프로젝트는 240건을 넘어섰으며 여기에서 발생될 온실가스 감축량도 연간 7천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현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CDM 프로젝트는 1,0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2년까지 총 15억 이산화탄소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는 세계에서 7억 8천만톤의 이산화탄소가 거래되었으며 거래금액은 94억 1백만 유로에 이르렀다. 탄소 거래량의 절반은 CDM(CER)이며 배출권(AAU)은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며 JI(ERU)는 극소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소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에 비해 8.5배와 25배 증가한 규모인데 이는 교토의정서 체제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단계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CDM 프로젝트의 의욕적인 추진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2012년 이후(Post-Kyoto)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05년말의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의 부속서 I 국가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ad-hoc working group)와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장기대화(Long-Term Dialogue)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올 5월에 개최된 제24차 기후변화 부속기구회의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2005년 1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1)에서는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부속서 I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는 최소한 2005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토의정서 규정(3조 9항)에 의한 결정사항(Decision1/MOP.1)이다.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의무부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속서 I 국가의 주장보다는 논의가 부속서 I 국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이 수용되었다. 부속서 I 국가는 1차 공약기간과 2차공약기간 사이에 공백(gap)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를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2006년 3월까지 의정서 3조 9항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2006년에 개최될 제24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올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24차 부속기구회의에서는 부속서 I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관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어 2007년 말까지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무부담에 관한 워크샵은 제12차 당사국총회(COP 12), 2007년의 부속기구 및 제13차 당사국총회까지 모두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부속서 I 국가는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감축비용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등을 분석한 이후에 부속

서 I 국가의 감축의무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개최될 워크숍을 이러한 분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도국은 워크숍이 단순한 정보교환의 기회이어야 하며 부속서 I 국가는 1차공약기간과 2차공약기간과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치화된 구체적인 의무 부담 목표와 의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속서 I 국가의 의무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무부담 목표 수준,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과거 정책으로부터의 교훈, 의무부담 방식 설계 및 법적·제도적 문제 등 의장이 제시한 목록을 토대로 향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제11차 당사국총회(COP 11)에서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장기적 대화를 개시한다는데 합의도 도출했다. 미국과 개도국은 정식협상보다는 비공식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제24차 부속기구회의에서는 워크숍운영방안, 논의의제 선정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제24차 부속기구회의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의 적응, 기술이전, 시장메카니즘 확대 등 4개 의제를 중심으로 향후 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U 및 부속서 I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CDM 및 시장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EU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온도를 2℃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15-3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도국은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보다는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 선진국의 선도적인 의무와 적응 관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의 워크숍 운영방안과 논의의제 선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의장이 올 8월말까지 향후의 대화체제 논의의제 및 운영방식을 제안하기로 결정되었다.

올 11월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제12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2)에서는 부속서 I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ad-hoc working group)와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할 대화 채널(Long-Term Dialogue)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속서 I 국가의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가 2007년 말에 개최될 제13차 당사국총회(COP 13)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작년의 당사국총회(COP 11)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부속서 I 국가의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이 1차공약기간과 2차공약기간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사항에 대한 각국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24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의무부담 참여국가로서 한국이 거론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에 대한 준비가 보다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노동운(dwroh@keei.re.kr)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와 전력산업

서언

1997년 IMF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주식 취득의 제한과 관련된 법규정이 대폭 완화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 제한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환경 속에서 특히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M&A 개요

M&A란 merger & acquisition의 줄임말로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합병(merger)은 둘 이상의 기업이 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 통합되어 법률적, 사실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인수(acquisition)는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일컫는다.

M&A는 지배권 취득방식, 결합형태, 거래의사, 지불 수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특히 거래의사에 의해 우호적(friendly) M&A와 적대적(hostile) M&A로 분류된다. 여기서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의 구분은 피인수(합병)기업의 경영진이 보이는 M&A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의 태도에 의한다.

M&A의 목적 및 동기는 (1) 경제적 요인(Economics incentives), (2) 경영전략적 동기(Business strategy reasons), (3) 재무적 동기(Financial reasons) 등이 있고, 이론적 근거로는 (1) 효율성 이론(Efficiency theory), (2) 정보와 신호효과(Information and signaling), (3)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4) 처분 가능한 현금흐름(Free Cash Flow; FCF), (5) 생산요소의 불균형(disparity of production factors) 등을 들 수 있다.

M&A의 직접적 효과는 기업과 시장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기업 단위에서는 다시 재무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ment structure)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증가, 부실기업의 퇴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 간접적(파급) 효과로는 선진경영기법의 전수, 기업경영의 외부감시기능 강화, 노동시장에의 효과 등이 있다.

M&A의 공략 대상 기업의 주요 요건은 (1) 대주주 지분비율이 낮은 경우, (2) 주가수익률(PER)이 낮은 경우, (3) 자산가치(asset value)에 비해 주식의 가격이 저평가된 기업, (4) 현금흐름(cash flow)이 풍부하면서 저평가된 기업, (5) 내부유보율(accumulated earnings ratio, retention ratio)이 매우 높은 기업 등이다.

적대적 M&A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1995년부터 전체 M&A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다가, 2000년을 정점으로 M&A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선 후, 2005년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2조 달러 수준에 달하며 사상 세 번째의 활황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전체 M&A 시장 장세와 함께 해외 투기자본의 급증에 따라 적대적 M&A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대적 M&A의 국·내외 주요 사례로는 보다폰(Vodafone)과 만네스만(Mannesman)간의 합병, KT&G와 아이칸(Ichan)과의 분쟁 등이 있다. 에너지 산업에서의 적대적 M&A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최근 2005년에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미국 3위의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 인수 시도, 독일 에너지 대기업인 에온(E.On)의 스페인의 최대 전력회사인 엔데사(Endesa) 인수 시도,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의 영국 최대 가스공급사인 센트리카(Centrica) 인수 시도 등이 있다.

한편, EU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각각 단일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지침(1996년)에 이어 2003년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

회원국은 2007년 7월부터 전력 및 가스시장을 전면개방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의 산업 및 기업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EU 국가 내에서, 에너지 산업에서의 M&A 및 적대적 M&A의 사례와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U 에너지 산업에서의 (적대적) M&A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으로 예정된 전력 및 가스시장의 전면개방 계획 등에 따라 EU 회원국 내에서의 전력 및 가스업계의 M&A의 활발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조사기관인 Dealogic에 따르면 2005년도 말 현재 유럽에서 발생한 M&A는, 전 세계 M&A 거래금액의 30%를 차지하는 104억 달러규모로 77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활발한 M&A의 요인 중의 하나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자유화(liberalization) 움직임 때문이다. 한편, 역설적으로 일부 국가에서의 非자유화가 M&A 딜(deal)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이 대규모의 높은 가격의 M&A에 대한 근거를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EU내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국가간 입장이 상이한데, 이는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을 목표로 하는 EU의 기본적인 원칙 실현의 요원함을 반증한다. 이러한 적대적 M&A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는 EU내 국가群의 전력 및 가스 업종의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은 국가 간의 입장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업계에 대한 적대적 M&A와 관련하여 주요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세계 주요국도 적대적 M&A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하고 산업(업종)별로도 다른 견해를 가지는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대적 M&A를 적극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유럽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M&A에 자국 기업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대적 M&A를 제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산업에서의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다음 표와 같이 IMF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왔다.

한편, 주요국의 M&A의 규제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 주식대량보유 신고제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이 모두 도입하고 있으며, 의무공개 매수제는 영국만이 도입을 하고 있다. 황금주제도는 영국과 일본이, 차등의결권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일본이 도입을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8년부터 ‘엑손 플로리오(Exon-Florio)법’을 통해 국가기간 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있고, 스페인은 황금주 제도를 보유함으로써 적대적 M&A에 방어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사전 심사제’를 시행해 공공질서·보건·안보 등

IMF 이후 적대적 M&A 관련 주요 규제의 변화

세부 조항	내 용	비 고
대량소유제한제도(10% rule) 폐지(1997년 4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외부인이 상장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의 폐지	M&A 활성화
강제공개매수제도 폐지 (1998년 2월)	주식을 대량 보유하려면 나머지 주식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하였던 제도의 폐지	M&A 활성화
정리해고법안 통과 (1998년 2월)	정리해고를 허용	M&A 활성화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제도(기간산업 제외)폐지(1998년 5월)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제한하는 제도의 폐지	M&A 활성화
M&A 사모펀드 조성과 의결권 허용(2001년 5월)	-	M&A 활성화
자기주식 취득수량 제한 폐지(1998년 5월)	부당한 경영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시 한도를 폐지	경영권 방어제도
주식대량보유 공시 의무 (5% rule) 강화(1998년)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1% 이상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강화	경영권 방어제도

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투자는 프랑스 정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이 내려진 후에도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산업구조

먼저 발전, 송·배전, 판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발전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이 1999년 확정되면서 이를 통해 2001년 4월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자회사가 설립되고 전력거래소가 개설되면서 발전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발전부문은 6개 발전자회사와 5개의 민간발전회사가 있다. 현재 송전사업은 한국전력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면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송전사업이 가능하다. 배전부문은 송전부문과 같이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거 경쟁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타 부문으로 발전건설서비스산업, 전기공사업, 발전소건설기술자문 및 사전설계서비스, 전력산업 정비시장 등이 있다.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산업전반에 대한 M&A와 관련된 법규제는 크게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한다.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제는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오다가 1998년에 일반법인에 대한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공공적 법인’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전력산업에서의 M&A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전력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03조의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규정

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40%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6-30호)에 의하면, 송전업과 배전 및 판매업은 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미만일 것, ②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였을 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증권업감독규정(40%)과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50%,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발전자회사(한수원 제외)는 현재 모든 지분이 한국전력에 의해 100% 소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재의 지분구조에서는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한국전력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자회사의 지분 매각이 발생하였을 때,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0호)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자회사, 이하 한수원)은 다른 발전자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는 한수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은 불가능하고, 한국전력이 한수원의 지분을 매각하였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0호)에 의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s,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 행위에 대한 규제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에 관한 규제완화의 궤와 함께 한다.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M&A 시장의 활황장세와 투기자본의 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M&A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에서도 방송·통신·전기·가스 등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M&A 제도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내외 자본에 의한 M&A 및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있다. 적대적 M&A 제도에 있어 공격자와 방어자를 규제하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의 M&A 및 적대적 M&A 시도는 전력산업 구조의 특수성,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규정 등에 의해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에너지, 특히 전력 부문에서의 M&A 및 적대적 M&A의 허용여부 및 제도 개선 문제 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측면, 소득분배의 문제 및 공급 안정성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현동(hdkim@keei.re.kr)

해외 에너지시장 동향

미국의 고유가 대응 동향

가. 개요

- 미행정부는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장기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유가가 예상밖으로 급등함에 따라 보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
 - 이는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데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
-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긴급처 방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격은 배럴당 70불(WTI기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
 - 추가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그마한 공급 충격에도 국제원유가격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측
 - 전 세계적으로 여유 공급물량은 1일 150만배럴에 불과

나. 최근의 주요대책 ; Bush 대통령의 고유가 대응방안 제시

- Bush 대통령은 미재생연료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 주최 에탄올 생산자회의에서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책을 제시
- ① 가격질서 정착
 - 미공정위(FTC)가 추진해 온 휘발유 가격담합 및 조작에 대한 조사를 미법무부, 에너지부 및 50개 주정부와 공조하여 강력히 추진
 - 미석유업계에 대한 일부 조세감면 혜택 축소
 - 고유가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석유업계에 대해 동 이익을 재

투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하라는 메시지 전달

② 자동차 연비 향상

- 에너지정책법(2005년 8월)에 의해 Hybrid 및 청정디젤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동종 차량을 구입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확대
- 자동차연비기준(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강화하고 이를 위한 권한을 의회에서 행정부로 이관 요구
 - 경트럭의 연비를 2000년 갤런당 20.7마일에서 2011년 24마일로 상향 조정

③ 원유 및 휘발유 공급 확대

- 전략비축(Strategic Petroleum Reserve : SPR)용 원유 및 제품구입을 당분간 중단토록 에너지부에 지시
 - 유류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동안 비축용 구매를 중단함으로써 유류수요 감소를 유도
 - 지난해 제정된 에너지정책법은 SPR을 현행 최고 9억배럴에서 10억배럴로 증가시키도록 규정함에 따라, 에너지부는 비축기지 건설계획(현재의 비축 능력 : 7.3억배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허리케인 이후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한 비축유(2,360만배럴)를 보충 중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연료첨가제 혼합의무와 관련, 식수오염 우려로 기존의 MTBE대신 에탄올을 첨가제로 사용토록 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시기(2006년 6월 1일)를 연기토록 환경청(EPA)에 지시
 - EPA는 공해가 상대적 심각한 일부지역에는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돕기 위해 첨가제 사용(MTBE의 경우 2-2.7%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년 6월부터 모든 첨가제를 에탄올로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적인 에탄올 공급 차질 가능성으로 휘발유 출하가 지연됨으로써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정유공장의 정제능력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 특히, 간단한 공정개선(minor modifications)에 대한 허가절차를 대폭 줄이고, 신규공장건설 및 시설확장에 대한 허가절차를 단순화하는 입법을 의회에 요구
- 알래스카 생태계보호구역(ANWR) 내에서의 원유채굴을 허용하는 입법의 금년내 추진 요구
- ④ 대체 연료개발 가속화
 -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제시한 에너지정책방향(Advanced Energy Initiative : AEI)에 대한 의회의 지지 요청. AEI의 실행을 위해 2007년 예산에 증액요구(3억불)한데 대한 의회의 승인 요청
 -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 확대
 - 미국내 시판 휘발유의 약 40%가 첨가제로서 에탄올 함유(2005년 에탄올 사용량 40억갤런) 그러나, 에탄올 연료(E85, 에탄올 85%+휘발유 15%) 보급은 초기단계(전국에 600개 판매소에 불과)
 - 대체수송연료로서 Cellulosic Ethanol, 바이오디젤 등의 개발·생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강화
 - 일반 전력으로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Plug-In Hybrid)용 전지 개발을 위한 예산도 증액

다. Bush 대통령의 고유가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

- 시장에서는 Bush 대통령의 고유가대책이 단기적·신규 효과가 미흡하고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공급우려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유가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석유업계는 미국내 생산확대 등에는 환영하면서도 가격담합 조사, 조세감면 축소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

미국의 고유가 대책 주요 내용

세 부 내 용	장단기 효과		신규대책 여부	
	단기	장기	신규	기존
전략비축유 비축 일시중단			○	
석유첨가제에 대한 환경기준적용 완화	○			○
하이브리드차량 세제혜택 확대		○		○
정유설비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		○
알래스카 등 국내 원유생산 확대		○		○
석유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 축소		○	○	
에탄올/재생연료 이용확대		○		○

자료) : JPMorgan 세계에너지전략팀 분석보고서(2006.4.26)

- 최근 미 의회의 특별세 부과논의와 함께 1/4분기 영업실적의 호조 등으로 업계에 대한 미 정부, 의회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산업자원부 해외 상무관 보고자료)

고유가에 따른 자원보유국인 호주의 동향

- 호주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최대 수혜국가의 하나
 - 석탄 및 광물자원 가격상승으로 수출증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 2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자원수출 21% 증가), 수입 2% 감소로 무역적자가 AU\$19억 감소한 595백만불 수준
 - 원유는 순수입국이지만, 석유개발회사(Santos) 등은 33% 수입 증가
- 전체적으로 수혜국임에도, 부분적으로는 에너지, 특히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항공 등 운송요금 인상 요인 증가
 - Qantas 항공사 등은 요금 조정 검토 및 원가절감 노력 강화
- 단기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대책 검토·추진
 - 최근 “에너지효율향상법(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Act)”를 입법 예고 하였고, 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적극 추진

- 동 법은 250여개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한국의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대책과 유사
- 또한, 우리나라광산 개발 및 원자력발전의 도입 여론 형성
 - 반원전정책의 노동당 및 서부호주 정부 등에 대한 설득 및 압박(산업자원부 해외상무관 보고자료)

G8 재무장과 회의,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에너지서비스 강조

- 지난 6월 9일(토)부터 6월 10일(토)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8 재무장관 회의는 에너지안보, 조류인플레인자 공동대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 및 빈곤문제 해결 노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G8 재무장관 Pre-Summit 공동성명과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에너지서비스 접근을 강조하는 별도 성명을 채택함
- 7월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에너지안보 문제를 중점 협의하였으나 에너지안보에 대한 공급국과 수요국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선언 이외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에너지안보부문에서는
 - 러시아는 작금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급제한에 기인했던 1970년대와는 달리 소비와 수요측면에서의 충격 때문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공급국 뿐만 아니라 수요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세계적인 중대한 사항임을 재차 강조함
 - Kudrin 러시아 재무장관은 에너지현장상의 주요 원칙을 공유하고 앞으로 도 공유해 나가겠지만 에너지현장에 핵에너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통과관련 규정이 수정되어야 비준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함

- Pre-Summit 공동성명에서는 회원국들이 에너지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에너지시장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명시함
-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접근에 관한 공동성명은 에너지 서비스 결핍이 경제성장의 장애가 되고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략 중점 추진, 저해택 계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확대, 병원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유용성 확보 및 지속개발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함(산업자원부 해외상무관 보고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미츠비시상사의 필리핀내 온실가스감축 사업 계획 승인

- 일본 미츠비시(三菱)상사가 필리핀에서 추진하게 될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필리핀을 사업 대상국으로 하는 안건으로는 처음으로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음
- 미츠비시상사는 지난 3월 29일 사업계획 상대회사인 필리핀 주류 대기업 탄두아이디스틸러스와 양해각서를 체결. 이 회사 산하의 에탄올 제조회사 앵솔루트케미컬에 바이오가스를 회수키 위한 메탄가스 집적장치와 오수 처리시설을 내년 안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츠비시상사가 경제산업성에서 CDM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산둥(山東) 동약(東岳) 수소불화탄소(HFC23) 소각 계획', 올 6월 파키스탄의 '아산화질소(N₂O) 분해 계획' 에 이어 3번째임
-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담당자는 지난 28일 NNA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서를 받아 승인하기까지는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함. 또 필리핀에

서 실시되는 사업으로는 CDM 사업의 신청과 승인 모두 처음이라 앞으로 필리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국제연합(UN)의 CDM이사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

- 미츠비시상사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에 사업 신청을 한 건 지난 5월 중순이었으며 필리핀측의 승인 시기로는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에서는 이번 필리핀 외에 말레이시아에서 7건, 베트남에서 4건, 태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1건 등 총 15건이 지금까지 CDM 사업 승인을 받음

일본 국제협력은행, 인도네시아와 청정개발체제 관련 업무협정 체결

-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인도네시아 환경담당국무장관사무소는 26일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활용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측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측이 금융면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
- 이번 협정에서 JBIC는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을 촉진, 이를 통해 얻게 된 배출권을 일본 기업들이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
- 협정에 따르면 환경담당국무장관사무소가 JBIC측에 CDM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를 JBIC와 일본정책투자은행(DBJ), 민간기업 등이 배출권 확보를 위해 설립한 일본카본파이낸스(JCF)뿐 아니라 다른 일본 기업들에게도 전달한다. 또 JBIC는 금융면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환경담당국무장관사무소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국가 CDM 사업 승인 기관(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으로 시멘트 업계에서 2건, 팜

- 오일(CPO) 사업에서 2건, 농업에서 1건, 태양광발전 이용 사업에서 1건 등 현재까지 총 6건의 CDM 사업을 승인. 또 팜오일 사업과 태양광발전 이용 사업이 CDM이사회에 등록돼 있음
- 협정에 조인한 인도네시아의 환경담당국무차관은 이 사업들을 통해 향후 7~10년간 300~4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제시. 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문은 에너지 사업이라고 말한 뒤 잠재성이 높은 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사업이라는 견해도 나타냄.
 - JBIC가 아시아에서 이 같은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며 향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순차적으로 체결해 나갈 예정임

러시아, 8월 1일부터 석유수출세 톤당 216.4달러로 인상

- 원유 수출세가 현행 톤당 199.8달러에서 8월 1일부터 216.4달러로 인상할 것임.
 - 러시아 재무부의 알렉산드르 사코비치는 “이것은 5~6월 우랄유의 평균가격(배럴당 64.46달러)을 기반으로 책정되었으며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함. 또한 “경유제품에 대한 수출세는 톤당 158.1달러, 중유제품은 85.2달러로 상승되며 이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함
 - 사코비치는 현재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 석유가격과 새로운 수출세가 적용된 이후의 가격간에는 평균적으로 약 7달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이 세금상승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실제로 석유회사들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톤당 50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었음
-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석유수출세를 7월 20일까지 공포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할 것임. 러시아의 석유수출세는 2개월마다 조정되고 있음.

중국, 2005년도 에너지소비 증가율 9.5% 시현

- 6월 30일 《BP 세계에너지 통계 2006》와 《국가에너지 통계연감 2005》의 연합 발표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발표회 소식에 의하면 2005년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2004년 대비 6%p 하락한 9.5%인 것으로 나타남
 - 《BP 세계에너지 통계 2006》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생산국이며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소비국으로 되어 있음
- 2005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전년대비 10.9% 증가하여 2004년에 14.4%보다 다소 둔화 되었음
- 2005년에 세계 석유소비의 증가는 하루 180만 배럴 하락함. 주요 원인은 미국·중국의 석유소비 증가둔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석유소비 약세를 들 수 있겠음. 2005년 석유생산량은 하루 88.9만 배럴 증가하여 2004년 대비 1% 증가함

중국, 앙골라 등 비중동국으로 원유수입 증가

- 중국이 중동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차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5월 중국은 1,24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여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시켰음. 주목할 점은 중국이 아프리카 앙골라로부터 32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여 중국 전체 원유수입에서 앙골라로부터 수입비중이 25.8%에 이르고 있다는 것임. 이로써 앙골라는 중국 제1의 원유 공급국이 되었음. 이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5월 한달 동안 중국으로 173만 톤의 원유를 수출했을 뿐임
- 금년 3월 스위스 무역자문회사인 Petromatrix GmbH는 “1~2월 동안 앙골라는 중국으로 매일 45.6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여 중국 수입총량에

서 15%를 차지했는데, 이는 OPEC 양대 석유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보다 많은 것이다”라고 발표함

- 현재 앙골라로부터의 원유수입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왜냐하면 Sinopec과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Sonangol이 공동 출자한 3개 해상 유전에서 원유생산이 이루어지면, Sinopec은 여기에서 매일 약 10만 배럴의 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의 석유수입전략이 완전히 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중국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 200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 어려울 듯

- 일본 환경성은 지난해 중앙성청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가 197만 톤가량으로 2004년에 비해 0.4% 감소했다고 발표함
 - 감축목표의 기준년도인 2001년보다 1.2% 줄긴 하였으나 ‘올해 말까지 7% 감축(약 185만5000톤으로 감축)’이라는 일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 일본 정부는 냉·난방 시간 재설정이나 조명에너지 절약 등의 대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력 공급업체 선정시 가격뿐 아니라 CO₂ 배출량도 고려해 전력회사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임
- 환경성에 따르면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1년에 비해 4.7% 늘었지만 난방용 중유나 해상보안청 선박의 연료 사용량 등이 5.9% 줄어 배출량 합계는 감소함

연구원 동성

1. 국제회의 공동개최

- ▣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기술협력 기반 구축』세미나 개최
 - 주최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연변과학기술대
 - 장소 : 연변과학기술대(중국 연길)
 - 일시 : 7월 4일(화) ~ 7월 6일(목)
 - 연변과학기술대와 “에너지부문 연구협력 및 정보교환” MOU 체결

2. 국내 전문가회의 주제발표

- ▣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의 정책과제” 발표(정한경, 7/13, 전기학회)
- ▣ “석유산업전문가회의” 개최(이달석, 7/14, 에너지경제연구원)
- ▣ “에너지시장 변화와 적정 전원구성” 발표(김진우, 7/18, 원자력심포지움)

3. 주요행사

-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세미나 개최
 - 주제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방안 및 운영 사례
 - 주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제주대학교 · 에너지관리공단
 - 일시 : 7월 13일(목), 14:00~18:00
 - 장소 : 제주 로베로 호텔

회원 제도 안내

구 분	제공 자료 (발행주기)	특기사항
일반 회원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월간)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 소개
일반 회원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rgy Insights (격주간)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연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기타 영문보고서 (부정기) 	해외 현지 배포
에너지 포럼 회원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월간) ·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분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정책연구보고서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5년) · 세미나 자료 (부정기)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격월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정보 제공 (회원전용 ID 및 Pass Word 부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 가입 문의 : 교육홍보팀 (031-420-2126)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발행인 : 방기열, 편집인 : 이복재
Tel) 031-420-2210, Fax) 031-421-0536
<http://www.keei.re.kr>

